

## 제6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서면회의)

1. 회의일시 : 2022. 12. 27.(화)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3.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안형환 부위원장  
김 현 상임위원  
김효재 상임위원(4인)

4. 불참위원 : 김창룡 상임위원(1인)

### 5. 회의내용

#### ① 서면회의 사유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면결의) 및 제14조의2(서면보고)에 의거, 의결사항 '가'는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안전에 해당되며, '나', '다', 보고사항 '가'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일상적·반복적 안전에 해당됨

#### ② 의결사항

##### 가.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2022-66(서)-242)

- 이태원 사고(10.29.) 피해자 가구가 소지한 TV수상기에 대해 1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 나.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지정 고시에 관한 건(2022-66(서)-243)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 (사)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인천여성가족재단(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사)광주여성민우회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사)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사)세종YWCA 성인권상담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사)충북여성인권 부설 상담소 늘봄, 여성 긴급전화 1366 전남센터,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

전화 1366 경북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 제주YWCA 디지털성범죄상담소 등 17개 기관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하여 운영('23.1.1.~'23.12.31.)하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다. 민원신고 등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66(서)-244~257)**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11개 유통점에 각 360만 원, 2개 유통점에 각 300만 원, 사전승낙서를 미게시한 1개 판매점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4개 유통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하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3] 보고사항**

**가. 2022년도 3차 플로팅광고 삭제제한 행위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 플로팅광고 관련 이용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 결과를 원안대로 접수함